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0호 2015. 5. 18. (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3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89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5-3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0차) 4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5-29호 관광농원 지정 취소 고시 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402호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
- 하동군 공고 제2015-403호 소하천 정비계획 공고(대송천) 8
- 하동군 공고 제2015-404호 소하천 정비계획 공고(의신천) 15
- 하동군 공고 제2015-406호 대송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22
- 하동군 공고 제2015-407호 의신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29
- 하동군 공고 제2015-408호 하동군 금고 지정계획 공고 33
- 하동군 공고 제2015-423호 2015년도 하동군 도로보수원 채용 공고 36
- 하동군 공고 제2015-4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6
- 하동군 공고 제2015-44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9
- 하동군 공고 제2015-452호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1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0호 2015. 5. 18. (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3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89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5-3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0차) 4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5-29호 관광농원 지정 취소 고시 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402호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
- 하동군 공고 제2015-403호 소하천 정비계획 공고(대송천) 8
- 하동군 공고 제2015-404호 소하천 정비계획 공고(의신천) 15
- 하동군 공고 제2015-406호 대송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22
- 하동군 공고 제2015-407호 의신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29
- 하동군 공고 제2015-408호 하동군 금고 지정계획 공고 33
- 하동군 공고 제2015-423호 2015년도 하동군 도로보수원 채용 공고 36
- 하동군 공고 제2015-4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6
- 하동군 공고 제2015-44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9
- 하동군 공고 제2015-452호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1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5-3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89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4. 2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감나무골길 32-3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30 호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669-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감나무골길 32-3	20150430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2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2-6	20150430	20070618	진교의 연원(淵源)을 적용하여 민다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340-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울곡길 7-13	20150430	20070618	울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758-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50	20150430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43-11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0-14	20150430	2007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256-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32-28	20150430	2008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77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상쌍길 82	20150430	20080402	조선시대 계절따라 학이 날아와 서식하는 곳이라 숲이 청정지역으로 앞들에 학의 먹이가 많았다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18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44	20150430	2008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47-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67-52	20150430	20080402	마을앞 뚝뫼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39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새장터길 98-1	20150430	20090302	새장터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5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길 3-2	20150430	20090302	의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11-1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47	20150430	20090302	목도라는 자연마을이름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18-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2-1	20150430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18-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2-2	20150430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18-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2-3	20150430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18-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32-4	20150430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하동군 고시 제2015-3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0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5. 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우길 30-66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5.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5) 제 430 호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309-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우길 30-66	20150507	20070618	원우의 윗마을이라 하여 붙여 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07-4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17	20150507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619-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8-46	20150507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76-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33	20150507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70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새동네길 60-115	20150507	20080402	주민들이 평소 친숙하게 부르 는 길로 새동네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1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길 80	20150507	20080402	월봉산 아래 위치하였고 도덕 천이 월횡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9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267-40	20150507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 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산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길 33-44	20150507	20090302	뒷산의 생김새가 뒤달방아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자 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5-1호

관광농원 지정 취소 고시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두양관광농원 사업자의 폐업신고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85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광농원 사업자 지정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자

- 상호 및 대표자 : 두양관광농원(대표:박종균)
- 주 소 : 진주시 명석면 광재산로 33

2. 관광농원 지정취소 현황

- 위 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98
(옥종면 두양리 63-1번지 일원)
- 규 모 : 17,623㎡
- 지 정 연 도 : 1992년
- 지정 취소일 : 2015년 5월 7일

3. 취소사유 : 사업자 원에 의함

하동군 공고 제 2015 - 402호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5년 1월 1일
- 공시대상 : 하동읍 읍내리 48-6번지 외 16,733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주택과 부속토지의 총액)
- 공시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홈페이지 게재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30일간)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면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토지건축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880-2299)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8) 제 430 호

공 고 제2015 - 403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대송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27일

하동군수(인)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대송천	대 송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48-13	1.600	1.600	교량 4개소	2015. 05월	2017. 05월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대송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대송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지 ~ 대송리 748-13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1.600km, 교량 4개소
 - 사 업 비 : 2,827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번지 ~ 대송리 748-13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05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9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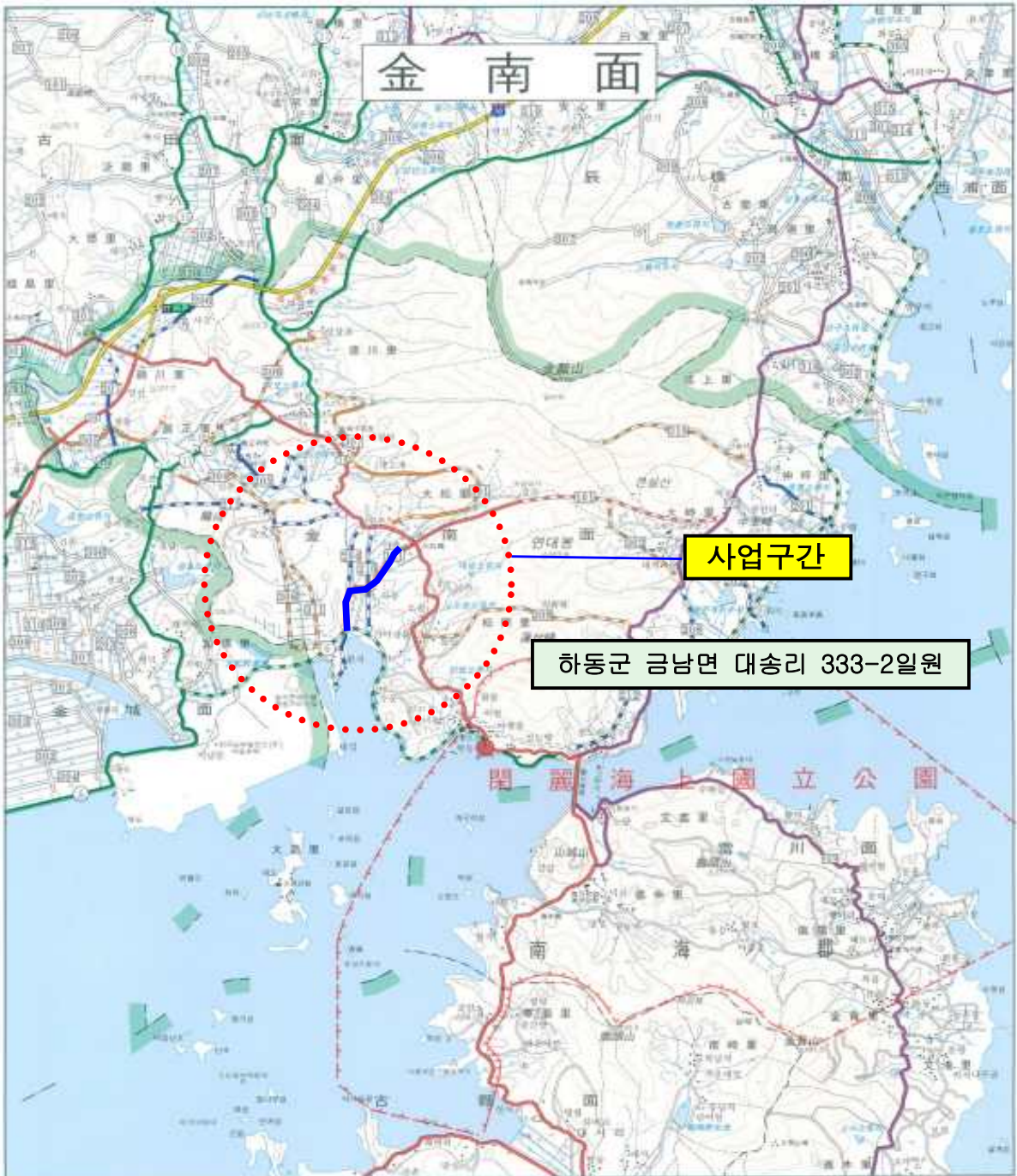
(금액 : 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2,827	30	1,000	1,797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05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 - 880 - 2532~4)

위 치 도

SCALE = 1 : 50,000



< 상 장 암 천 정 비 사 업 편 입 토 지 조 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	금남	대송	740-9	답	1,530	100	하동군	
2	하동	금남	대송	719	구	3,330	1,951	국(농림수산부)	
3	하동	금남	대송	746	도	975	975	국(농림수산부)	
4	하동	금남	대송	739	도	80	41	국(농림수산부)	
5	하동	금남	대송	737	구	1,251	204	국(농림수산부)	
6	하동	금남	대송	840-16	구	3,771	3,771	국(국토교통부)	
7	하동	금남	대송	678	답	175	175	하동군	
8	하동	금남	대송	856-6	구	217	113	국(국토교통부)	
9	하동	금남	대송	715	구	1,707	893	국(농림수산부)	
10	하동	금남	대송	716	도	509	291	국(농림수산부)	
11	하동	금남	대송	747	도	848	848	국(농림수산부)	
12	하동	금남	대송	718	도	2,850	1,074	국(농림수산부)	
13	하동	금남	대송	717	구	958	662	국(농림수산부)	
14	하동	금남	대송	840-10	구	1,536	977	국(국토교통부)	
15	하동	금남	대송	379	도	3,835	1,492	국(농림수산부)	
16	하동	금남	대송	313	구	15,580	41	국(농림수산부)	
17	하동	금남	대송	322	도	1,182	29	국(농림수산부)	
18	하동	금남	대송	272-11	도	367	367	국(국토교통부)	
19	하동	금남	대송	321-6	답	851	99	국(국토교통부)	
20	하동	금남	대송	333-8	도	289	244	국(국토교통부)	
21	하동	금남	대송	397-4	답	8	8	하동군	
22	하동	금남	대송	840-1	구	14,527	1,511	국(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12)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금남	대송	740-8	답	968	167	김동관	김해시 구산동 410 구산동제4주공아파트 403-1304
2	하동	금남	대송	740-7	답	676	119	문종윤	대송리 739
3	하동	금남	대송	740-6	답	806	98	문갑룡	대송리 479
4	하동	금남	대송	740-5	답	1,055	80	황금석	대송리 478
5	하동	금남	대송	740-4	답	1,194	100	황금석	대송리 478
6	하동	금남	대송	740-3	답	969	144	장미화 외 1	여수시 신기동 90 제일모직사택5동 502호
7	하동	금남	대송	740-2	답	693	116	이춘기	대도리 143-1
8	하동	금남	대송	740-1	답	1,103	152	이춘기	대도리 143-1
9	하동	금남	대송	738	답	800	326	이춘기	대도리 143-1
10	하동	금남	대송	679	천	53	53	최대성	
11	하동	금남	대송	713-2	답	954	954	강영태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12	하동	금남	대송	713-1	답	948	948	강영태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13	하동	금남	대송	712	답	1,498	706	이승수	진정리 586
14	하동	금남	대송	711	답	1,649	102	임도섭	대송리 510
15	하동	금남	대송	710	답	2,553	78	류 덕	대송리 480
16	하동	금남	대송	748-13	답	2,374	202	구인순	진주시 인사동 142-8
17	하동	금남	대송	748-12	답	1,638	168	문재억	대송리 538-1
18	하동	금남	대송	748-11	답	2,066	164	문재억	대송리 538
19	하동	금남	대송	748-10	답	2,347	138	이학세	대도리 139
20	하동	금남	대송	748-9	답	2,604	180	이정수	대도리 23
21	하동	금남	대송	748-8	답	2,806	129	정규원	대송리 527
22	하동	금남	대송	735-4	답	1,138	373	이행철	진해시 용원동 1208 일신님아파트 107-1406
23	하동	금남	대송	735-3	답	1,042	148	이옥기	대도리 42

하 동 군 공 보

(13)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4	하동	금남	대송	735-2	답	1,351	174	양철실	진정리 497
25	하동	금남	대송	735-1	답	1,546	199	최경식	대송리 767
26	하동	금남	대송	734-6	답	2,315	201	양오석 외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27	하동	금남	대송	734-5	답	1,296	90	이세영	대도리 118
28	하동	금남	대송	734-4	답	1,007	66	이신오	대도리 118
29	하동	금남	대송	734-3	답	2,267	127	이신오	대도리 118
30	하동	금남	대송	751-1	답	1,202	233	이갑수 외2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58-1
31	하동	금남	대송	676-9	답	1,954	271	조영수	대송리 725-2
32	하동	금남	대송	399-1	도	459	218	이종민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828
33	하동	금남	대송	439-13	답	719	59	김갑선	대송리 2-1
34	하동	금남	대송	397-1	답	82	82	이동열	대송리 405
35	하동	금남	대송	397-3	도	64	64	이동열	대송리 405
36	하동	금남	대송	439-12	답	1,538	161	김갑선	대송리 2-1
37	하동	금남	대송	439-11	답	2,052	134	김점숙	통영시 명정동 415-9
38	하동	금남	대송	439-10	답	1,188	54	조순호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45-7통영청구하이츠 202-703
39	하동	금남	대송	439-9	답	1,475	59	김도임	대송리 173
40	하동	금남	대송	439-6	답	1,376	8	이수양	송문리 79
41	하동	금남	대송	439-5	답	1,867	53	서원상	금남면 동서실 16-18
42	하동	금남	대송	439-4	답	1,333	41	이준기	대송리 334
43	하동	금남	대송	439-3	답	2,231	84	정태원	통영시 미수동 434-9
44	하동	금남	대송	439-2	답	3,334	137	황금석	금남면 덕오길 218
45	하동	금남	대송	307-1	답	52	52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울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6	하동	금남	대송	307-11	도	101	101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울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하 동 군 공 보

(14)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47	하동	금남	대송	305-7	도	23	23	정기재	대송리 280-3
48	하동	금남	대송	305-6	도	33	33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올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9	하동	금남	대송	274-3	대	340	7	지원근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9-4 그리미아빌 201호
50	하동	금남	대송	274-7	도	43	43	지길례	부산 사상구 주례동 300-14
51	하동	금남	대송	274-5	도	187	82	지길석	대송리 232
52	하동	금남	대송	272-4	도	280	21	정기용	대송리 326
53	하동	금남	대송	271-1	도	18	18	정기재	대송리 284
54	하동	금남	대송	321-3	답	1,241	46	정기재	대송리 284
55	하동	금남	대송	439-1	답	3,000	76	김종화	대송리 719

공 고 제2015 - 404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신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27일

하동군수(인)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의신천	의 신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776-3	0.700	0.700	부대공 1식	2015. 05월	2016. 12월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430 호

의신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의신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4 ~ 대성리 1776-3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700km,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2,155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4번지 ~ 대성리 1776-3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05 ~ 2016.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730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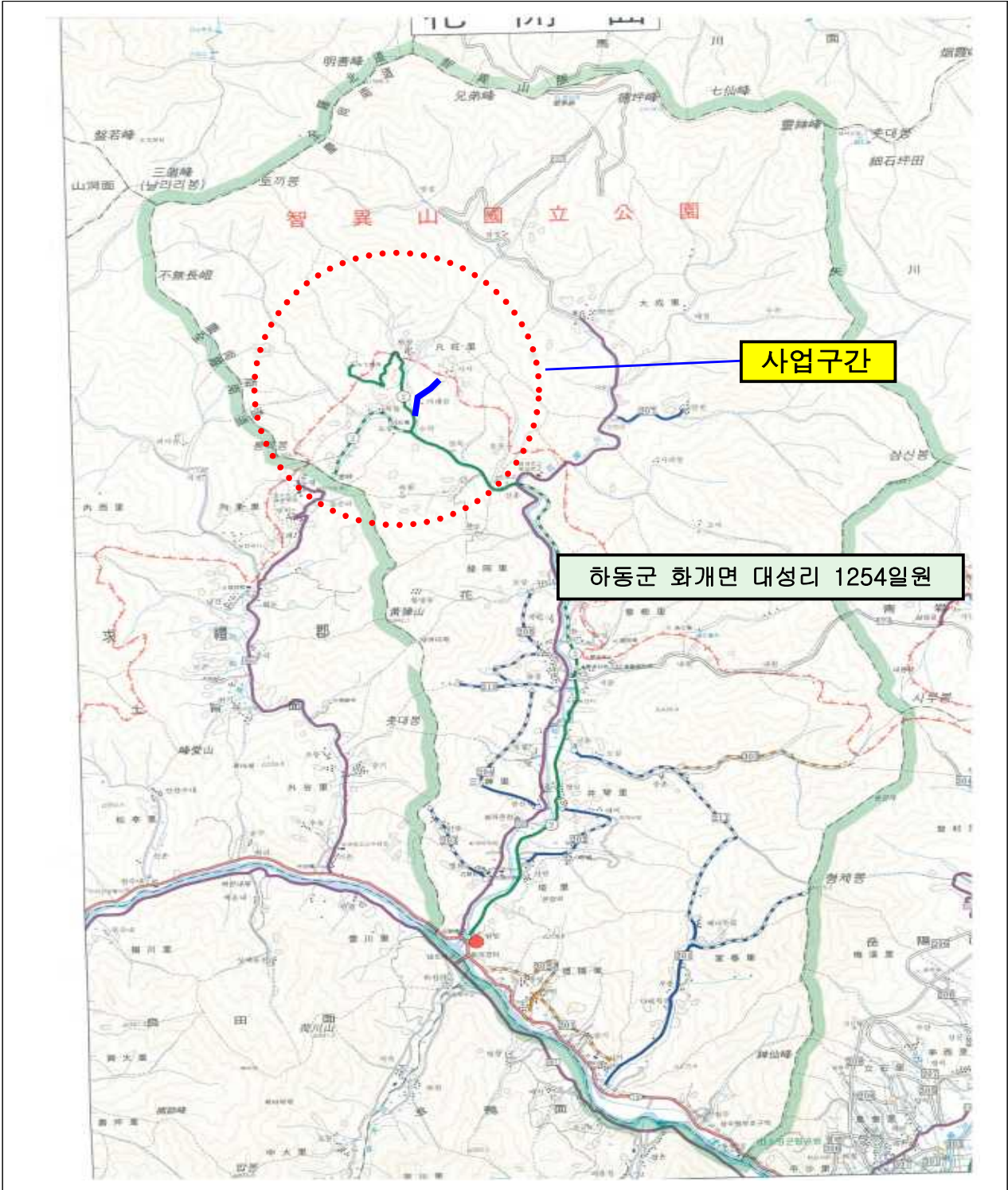
(금액 : 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2,155	100	1,500	555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05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 - 880 - 2532~4)

위 치 도

SCALE = 1 : 50,000



하 동 군 공 보

(18) 제 430 호

< 상 장 암 천 정 비 사 업 편 입 토 지 조 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화개	대성	1947	천	1,381,182	380	국(건설부)	
2	하동	금남	대송	1991	도	767	10	국(건설부)	
3	하동	금남	대송	1986	구	9,078	7,635	국(건설부)	
4	하동	금남	대송	산 224-3	도	694	33	국(환경부)	
5	하동	금남	대송	1988-5	도	251	251	국(건설부)	
6	하동	금남	대송	1318-3	도	195	195	국(환경부)	
7	하동	금남	대송	산 223-1	도	154	116	국(환경부)	
8	하동	금남	대송	1321-1	도	38	38	하동군	
9	하동	금남	대송	1988	도	2,978	48	국(건설부)	
10	하동	금남	대송	1990	도	248	97	국(건설부)	
11	하동	금남	대송	1985	구	3,236	645	국(건설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19)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금남	대송	1259	답	2,499	43	김일만	대성리 1372
2	하동	금남	대송	1258	답	2,304	59	정옥균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13 꽃피버들마을 엘지아파트167-506
3	하동	금남	대송	1256	답	615	49	손정희	화개면 화개로 1405-6
4	하동	금남	대송	1257-2	답	1,321	120	정병옥	대성리 196
5	하동	금남	대송	1257-1	답	558	115	최연숙	김해시 삼계로 248 분성마을부영아파트 214동 1104호
6	하동	금남	대송	산223	임	2,226	366	의신마을회	
7	하동	금남	대송	1354-3	임	255	81	전주영	금성면 가덕리 1113-22
8	하동	금남	대송	1321	답	121	121	구일우	부산시 동구 수정3동 658-20
9	하동	금남	대송	1322	창	231	71	최송철	부산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영선동4가 반도보라아파트 104동1703호
10	하동	금남	대송	1354-2	답	287	31	최송철	부산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영선동4가 반도보라아파트 104동1703호
11	하동	금남	대송	산229	임	54,298	481	정향균	부산시 북구 덕포동 121-26
12	하동	금남	대송	1353-2	답	78	22	정신숙	대성리 1348
13	하동	금남	대송	1344	답	132	132	박상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0 은평뉴타운 상림마을732-1103
14	하동	금남	대송	1324	답	331	52	최송철	부산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영선동4가 반도보라아파트 104동1703호
15	하동	금남	대송	1343	답	50	5	정옥균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13 꽃피버들마을 엘지아파트167-506
16	하동	금남	대송	1325	목	307	307	정용수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1
17	하동	금남	대송	1327	답	46	46	정용수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1
18	하동	금남	대송	1328	대	243	243	김민출 외1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33번길 4 금호타운아파트 9동 1301호
19	하동	금남	대송	1326	답	268	268	정판봉	대성리 1389
20	하동	금남	대송	1135	답	212	212	정치현	대성리 1300
21	하동	금남	대송	1329	전	235	44	정의균	대성리 1357-2
22	하동	금남	대송	1134	대	274	21	이순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8가길 22-5 수풍아파트 301
23	하동	금남	대송	1133	답	86	3	김영섭	대성리 1288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4	하동	금남	대송	1124	대	93	93	유도곤	익산시 모현동 1가 2-1 현대아파트 101동1001호
25	하동	금남	대송	1041-7	답	2,879	73	이영옥	김해시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아파트 111동 1804호

하 동 군 공 보

(20)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4	하동	금남	대송	735-2	답	1,351	174	양청실	진정리 497
25	하동	금남	대송	735-1	답	1,546	199	최경식	대송리 767
26	하동	금남	대송	734-6	답	2,315	201	양오석 외 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27	하동	금남	대송	734-5	답	1,296	90	이세영	대도리 118
28	하동	금남	대송	734-4	답	1,007	66	이신오	대도리 118
29	하동	금남	대송	734-3	답	2,267	127	이신오	대도리 118
30	하동	금남	대송	751-1	답	1,202	233	이갑수 외 2	하동군 화개면 삼신 리 258-1
31	하동	금남	대송	676-9	답	1,954	271	조영수	대송리 725-2
32	하동	금남	대송	399-1	도	459	218	이종민	남해군 고현면 포상 리 828
33	하동	금남	대송	439-13	답	719	59	김갑선	대송리 2-1
34	하동	금남	대송	397-1	답	82	82	이동열	대송리 405
35	하동	금남	대송	397-3	도	64	64	이동열	대송리 405
36	하동	금남	대송	439-12	답	1,538	161	김갑선	대송리 2-1
37	하동	금남	대송	439-11	답	2,052	134	김점숙	통영시 명정동 415-9
38	하동	금남	대송	439-10	답	1,188	54	조순호	통영시 용남면 동달 리 945-7통영청구 하이츠 202-703
39	하동	금남	대송	439-9	답	1,475	59	김도임	대송리 173
40	하동	금남	대송	439-6	답	1,376	8	이수양	송문리 79
41	하동	금남	대송	439-5	답	1,867	53	서원상	금남면 동서실 16-18
42	하동	금남	대송	439-4	답	1,333	41	이준기	대송리 334
43	하동	금남	대송	439-3	답	2,231	84	정태원	통영시 미수동 434-9
44	하동	금남	대송	439-2	답	3,334	137	황금석	금남면 덕오길 218
45	하동	금남	대송	307-1	답	52	52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 로 132번길 10 을 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6	하동	금남	대송	307-11	도	101	101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 로 132번길 10 을 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하 동 군 공 보

(21)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47	하동	금남	대송	305-7	도	23	23	정기재	대송리 280-3
48	하동	금남	대송	305-6	도	33	33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울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9	하동	금남	대송	274-3	대	340	7	지원근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9-4 그리미아빌 201호
50	하동	금남	대송	274-7	도	43	43	지길례	부산 사상구 주례동 300-14
51	하동	금남	대송	274-5	도	187	82	지길석	대송리 232
52	하동	금남	대송	272-4	도	280	21	정기용	대송리 326
53	하동	금남	대송	271-1	도	18	18	정기재	대송리 284
54	하동	금남	대송	321-3	답	1,241	46	정기재	대송리 284
55	하동	금남	대송	439-1	답	3,000	76	김종화	대송리 719

하동군 공고 제2015 - 406호

대송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대송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8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대송천 정비사업
- 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 ~ 459-3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소하천 정비 L=1,600m
- 라. 사업기간 : 2015. 05. ~ 2017. 05 [2015년 편입용지 보상]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5년 04월 28일 ~ 05월 12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5년 5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 가 모두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 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 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 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1	금남면 대송리	740-9	답	1,530	100		하동군	
2	"	740-8	답	968	167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410 구산동제4주공아파트 403-1304	김동관	590819-1*****
3	"	740-7	답	676	119	739	문종윤	570823-1*****
4	"	740-6	답	806	98	479	문갑룡	370729-1*****
5	"	719	구	3,330	1,951		국(농림 수산부)	
6	"	740-5	답	1,055	80	478	황금석	361026-1*****
7	"	746	도	975	975		국(농림 수산부)	
8	"	740-4	답	1,194	100	478	황금석	361026-1*****
9	"	740-3	답	969	144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90 제일모직사택5동 502호	장미화 외 1인	720207-2*****
10	"	740-2	답	693	116	대도리 143-1	이춘기	480501-1*****
11	"	740-1	답	1,103	152	대도리 143-1	이춘기	480501-1*****
12	"	739	도	80	41		국(농림 수산부)	
13	"	737	구	1,251	204		국(농림 수산부)	
14	"	738	답	800	326	대도리 143-1	이춘기	480501-1*****
15	"	840-16	구	3,771	3,771		국(국토 교통부)	
16	"	678	답	175	175		하동군	
17	"	679	천	53	53		최대성	
소계				19,429	8,572			

하 동 군 공 보

(25)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18	금남면 대송리	856-6	구	217	113		국(국토 교통부)	
19	"	713-2	답	954	954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강영태	580914-1*****
20	"	713-1	답	948	948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강영태	580914-1*****
21	"	715	구	1,707	893		국(농림 수산부)	
22	"	712	답	1,498	706	진정리 586	이승수	550228-1*****
23	"	711	답	1,649	102	510	임도섭	481220-1*****
24	"	716	도	509	291		국(농림 수산부)	
25	"	710	답	2,553	78	480	류덕	410813-1*****
26	"	748-13	답	2,374	202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142-8	구인순	500318-2*****
27	"	748-12	답	1,638	168	538-1	문재억	480722-1*****
28	"	748-11	답	2,066	164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538	문재억	480722-1*****
29	"	747	도	848	848		국(농림 수산부)	
30	"	748-10	답	2,347	138	대도리 139	이학세	331121-1*****
31	"	748-9	답	2,604	180	대도리 23	이정수	390822-1*****
32	"	748-8	답	2,806	129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527	정규원	370110-1*****
33	"	735-4	답	1,138	373	진해시 용원동 1208 일신님아파트 107-1406	이행철	681220-1*****
34	"	735-3	답	1,042	148	대도리 42	이옥기	470919-1*****
소계				26,898	6,435			

하 동 군 공 보

(26)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35	금남면 대송리	735-2	답	1,351	174	진정리 497	양정실	550410-1*****
36	"	735-1	답	1,546	19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67	최경식	681113-1*****
37	"	718	도	2,850	1,074		국(농림 수산부)	
38	"	734-6	답	2,315	20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105동 602호	양오석 외 1인	650310-1*****
39	"	734-5	답	1,296	90	대도리 118	이세영	440922-1*****
40	"	734-4	답	1,007	66	대도리 118	이신오	320315-1*****
41	"	734-3	답	2,267	127	대도리 118	이신오	320315-1*****
42	"	717	구	958	662		국(농림 수산부)	
43	"	751-1	답	1,202	23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58-1	이갑수 외 2인	480406-1*****
44	"	676-9	답	1,954	271	725-2	조영수	371218-1*****
45	"	399-1	도	459	218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828	이종민	350830-1*****
46	"	840-10	구	1,536	977		국(국토 교통부)	
47	"	439-13	답	719	59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2-1	김갑선	571027-2*****
48	"	397-1	답	82	82	405	이동열	351017-1*****
49	"	397-3	도	64	64	405	이동열	351017-1*****
50	"	439-12	답	1,538	161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2-1	김갑선	571027-2*****
51	"	439-11	답	2,052	134	통영시 명정동 415-9	김점숙	501216-2*****
소계				23,196	4,792			

하 동 군 공 보

(27) 제 430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52	금남면 대송리	439-10	답	1,188	5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45-7 통영청구하이츠 202-703	조순호	761225-1*****
53	"	439-9	답	1,475	59	173	김도임	291129-2*****
54	"	379	도	3,835	1,492		국(농림 수산부)	
55	"	439-6	답	1,376	8	송문리 79	이수양	
56	"	439-5	답	1,867	5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서실 16-18	서원상	520616-1*****
57	"	439-4	답	1,333	41	334	이준기	270810-1*****
58	"	439-3	답	2,231	84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434-9	정태원	570425-1*****
59	"	439-2	답	3,334	13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218	황금석	361026-1*****
60	"	307-1	답	52	5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101동 1405(올량동, 성원아파트)	정범식	591201-1*****
61	"	307-11	도	101	10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101동 1405(올량동, 성원아파트)	정범식	591201-1*****
62	"	313	구	15,580	41		국(농림 수산부)	
63	"	305-7	도	23	23	280-3	정기재	
64	"	305-6	도	33	3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101동 1405(올량동, 성원아파트)	정범식	591201-1*****
65	"	322	도	1,182	29		국(농림 수산부)	
66	"	274-3	대	340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69-4 그리아빌 201호	지원근	780209-1*****
67	"	274-7	도	43	43	부산 사상구 주례동 300-14	지길례	550620-2*****
68	"	274-5	도	187	82	232	지길석	500115-1*****
소계				34,180	2,339			

하동군 공고 제2015 - 407호

의신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의신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8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의신천 정비사업
- 나.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4 ~ 1776-3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소하천 정비 L=700m
- 라. 사업기간 : 2015. 05. ~ 2016. 12 [2015년 편입용지 보상]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5년 04월 28일 ~ 05월 12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5년 5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하 동 군 공 보

(30) 제 430 호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 가 모두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 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 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 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 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31) 제 430 호

연 번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m)			소 유 자		
				대장면적	잔여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47	천	1,381,182	1,380,802	380		국(건설부)	
2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9	답	2,499	2,456	43	화개면대성리1372	김일만	
3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8	답	2,304	2,245	59	수원시팔달구화서동713 꽃피버들마을엘지아파트167 동506호	정옥균	
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6	답	615	566	4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05-6	손정희	
5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91	도	767	757	10		국(건설부)	
6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7-2	답	1,321	1,201	120	화개면 대성리 196	정병옥	
7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86	구	9,078	1,443	7,635		국(건설부)	
8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7-1	답	558	443	115	경상남도김해시삼계로248,2 14동1104호 (삼계동,분성마을부영아파트)	최연숙	
9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224-3	도	694	661	33		국(환경부)	
10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88-5	도	251	-	251		국(건설부)	
11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18-3	도	195	-	195		국(환경부)	
12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223-1	도	154	38	116		국(환경부)	
13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223	임	2,226	1,860	366		의신마을회	
1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54-3	임	255	174	81	금성면 가덕리 1113-22	전주영	
15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1	답	121	-	121	부산시 동구 수정3동 658-20	구일우	
16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1-1	도	38	-	38		하동군	
17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2	창	231	160	7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104동 1703호 (영선동4가,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최승철	
18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54-2	답	287	256	3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30, 104동 1703호 (영선동4가,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최승철	

하 동 군 공 보

(32) 제 430 호

19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229	임	54,298	53,817	481	부산시 북구 덕포동 121-26	정향균	
20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53-2	답	78	56	2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48	정신숙	
21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88	도	2,978	2,930	48	국(건설부)		
22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44	답	132	-	132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10은 평뉴타운 상림마을732-1103	박상준	
23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4	답	331	279	52	부산광역시영도구해안산책길3 0,104동 1703호(영선동4가, 영선동반도 보라아파트)	최송철	
2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43	답	50	45	5	수원시팔달구화서동713 꽃피버들마을엘지아파트167 동506호	정옥균	
25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5	목	307	-	307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1	정용수	
26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7	답	46	-	46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1	정용수	
27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8	대	243	-	24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33번길 4, 9동 1301호 (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김민출 외 1인	
28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6	답	268	-	268	화개면 대성리 1389	정판봉	
29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35	답	212	-	2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00	정치현	
30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9	전	235	191	44	1357-2	정의균	
31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34	대	274	253	21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3 8가길22-5, 301호(중동, 수풍아파트)	이순필	
32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33	답	86	83	3	1288	김영섭	
33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124	대	93	-	93	익산시모현동1가2-1현대아파 트 101동1001호	유도곤	
3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041-7	답	2,879	2,806	73	김해시어방동499대우유토피 아아파트 111동1804호	이영옥	
35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90	도	248	151	97		국(건설부)	
36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985	구	3,236	2,591	645		국(건설교 통부)	

하동군 공고 제2015 - 408호

하동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하동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하 동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2. 약정기간 : 3년 (2016. 1. 1 ~ 2018. 12. 31)
3. 신청자격
 - 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하동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동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복수금고 (제1금고, 제2금고)
5. 신청방법 : 금고별 구분없이 신청하며 신청(제안)서 방문 제출
6. 금고별 취급회계
 - 가.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나. 제2금고 : 기금

※ 금고지정공고일 이후에 설치되는 신설회계는 주금고에서 담당한다.
7.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지급
 -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판매
 - 지출원의 지출대행 약정 관련 업무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8. 신청절차
 - 가. 관계서류 열람 및 신청서 교부
 - 일 시 : 공고일 ~ 2015. 4. 29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장 소 : 하동군청 재무과
 - 대 상 : 신청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 열람서류 : 2013년 ~ 2014년 세입세출예산(결산)서, 기타 관련법령
 - ※ 예산(결산)서는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하 동 군 공 보

(34) 제 430 호

나. 신청(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5. 5. 20(수)~5. 21(목). 18:00까지

○ 장 소 : 하동군청 재무과

○ 제출서류 : 군 금고 지정신청서 및 신청안내서 상의 지정서류 일체

○ 제출부수 : 13부 (원본1, 사본12)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함

9.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와 같음

10. 평가방법

가.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

나.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하동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작성 및 제출시 주의를 요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재무과(☎ 055-880-2292)로 문의 바람

하 동 군 공 보

(36) 제 430 호

하동군 공고 제2015 - 423호

2015년도 하동군 도로보수원 채용 공고(안)

2015년도 하동군 도로보수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월 일
하 동 군 수

1. 선발예정인원 : 2명(남자)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실기시험(80점)

○ 체력측정 항목 및 배점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비고
상온아스콘(25kg)메고 25m 왕복달리기(초)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2위부터 2점씩 차감
턱걸이(회/60초)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2위부터 2점씩 차감
윗몸일으키기(회/60초)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2위부터 2점씩 차감
팔굽혀 펴기(회/60초)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2위부터 2점씩 차감

- 1) 상온아스콘(25kg) 메고 25m 왕복달리기 : 상온아스콘(25kg)을 메고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을 통과한 순간을 측정
- 2) 턱걸이 : 60초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팔을 편 상태에서 시작하여 턱의 앞부분이 철봉의 윗 부분에 닿는 횟수를 측정
- 3) 윗몸 일으키기 : 60초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깎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 4) 팔굽혀 펴기 : 엎드린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고 허리와 무릎은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구부려 가슴이 바닥에 닿기전까지 내렸다가 다시 복귀하는 횟수를 측정

※ 사고의 책임 : 본 채용시험 시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신체이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 응시자가 책임진다.

다. 면접시험(20점)

- 청렴성 및 책임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현장 업무 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전체 면접위원 평정성적 집계.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합산 고득점 자 순으로 하되 경쟁자가 없을 경우 면접시험만 시행.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 우선합격하고, 동일연령 시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처리.
- 합격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취소 되었을 경우 차순위자 합격처리.

3. 응 시 자 격

- 가.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남자로서 병역은 필하고 신체 건강한자

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남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고 있는 자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 5. 18. ~ 5. 20. 09:00~18:00(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나.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비 고
실기시험	하동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2015. 5. 26.(화) 14:00	
면접시험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종합상황실	2015. 5. 27.(수) 10:00	

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15. 5. 29일한
- 하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hadong.go.kr) 및 군청 게시판 공고
- 합격자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도로관리담당)

나. 접수방법

-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2) 응시원서 단체교부, 접수 및 중복접수는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함.

다.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1부
 -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즉석사진 사용불가)
- (2) 이력서 1부.(사진부착)
- (3) 주민등록초본 1부(병력사항 및 주소이력 전체 기재된 것)
- (4) 자기소개서 1부
-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 (6)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합격자에 한함)
- (7) 신원진술서(합격자에 한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38) 제 430 호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바. 시험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09:40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사.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880-252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하동군청 건설교통과장 귀하

본인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공개채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①

① 주 소	하동군 (읍.면) 연락처(휴대전화 : , 집 :)					
② 최 종 학 력	년 월 일	학교(과 년)졸업, 재학, 중퇴				
③ 경 력	년 월 일	일부터	근무(종사)			
	년 월 일	일까지				
	년 월 일	일부터	근무(종사)			
	년 월 일	일까지				
④ 자격증 소지사항						
⑤ 면허증 소지사항						
⑥ 3자녀 이상 여부						
⑦ 응 시 직 급	도로보수원(공무직)				⑬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으로 2매 같은 원판사진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⑫ 성 별		남
		(한자)				여
	⑩ 생 년 월 일	(만 세)				
	⑪ 혈 액 형					

.....

응시직급	도로보수원 (공무직)	응 시 표 (도로보수원 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으로 2매 같은 원판사진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성 별	남	
		(한자)			여	
	생 년 월 일					
2015.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도로명주소로 작성)
-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합니다.(2군데)
- ④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합니다.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3】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생 년 월 일	영 문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p> <p>2015 년 월 일</p> <p>성 명 : (서명)</p>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하 동 군 공 보

(42) 제 430 호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렬	전공분야
		공무직	도로보수원

도로보수원 임용예정분야에 대한 이해

(도로보수원 임용예정분야에 대해 아는 대로 간략히 쓰시오)

응시취지 및 향후계획

(임용예정기관에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적으시오)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2015. . .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간단히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하 동 군 공 보

(44) 제 430 호

【붙임 6】

채 용 신 체 검 사 서

① 구 분	② 시험실기관	③ 응 시 직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사 진 ※ 압인 또는 계인 (2.5cm×3cm)
⑥ 검 사 시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직 (도로보수원)			
⑦ 재 사 용				⑧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흉 위			cm	혈 압	
시 력(나안/교정)	좌: /	색 신 (색맹여부)		청 력 (교 정)	좌 : ()
	우: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 화 기 질 환				피부질환	
순 화 기 질 환				정신질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간 염 검 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15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①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합 격 <input type="checkbox"/> 불 합 격 <input type="checkbox"/> 판 정 보 류		간 염 예 방 접 종	<input type="checkbox"/> 필 요 <input type="checkbox"/> 불 필 요	
불 합 격 사 유			판 정 보 류 사 유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①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 주의사항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도로보수원)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검사결과 합격여부등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거나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430 호

하동군 공고 제2015-4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유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구 종료(15.6.30)에 따른 기구 개편
-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3. 주요 골자

○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 신설 및 조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

-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한시기구 개편(조례안 제3조의3)

- 한시기구 연장 및 명칭변경
 - 연장기한 : 2015. 7. 1 ~ 2018. 6. 30(3년)
 - 명칭변경 : 남해안개발과 → 산단조성과
- 한시기구 폐지 및 기능조정
 - 규제개혁추진단(폐지)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한시기구 개편(규칙안 제3조)

- 남해안개발과장 → 산단조성과장
- 남해안기획담당 → 산단기획담당, ·남해안보상담당 → 산단보상담당
- 규제개혁추진단장 폐지 및 업무이관
 - 규제개혁추진단장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 조정 및 신설(규칙안 제4조의 별표 1)

-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gabi100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마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제3조의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3(한시기구)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한시기구로 산단조성과를 둔다.

1. 산단조성과

-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에 관한 사항
-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 에 관한 사항
-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 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3의 산단조성과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중 “남해안개발과장”을 “산단조성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①(생략)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p>	<p>제3조(실·과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u>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 <u>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u></p>
<p>제3조의3(한시기구)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한시기구로 <u>남해안개발과, 규제개혁추진단</u>을 둔다.</p> <p>1. 남해안개발과 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다. 삭제 라.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p> <p><u>2. 규제개혁추진단</u> 가. <u>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p>	<p>제3조의3(한시기구)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한시기구로 <u>산단조성과</u>를 둔다.</p> <p><u>1. 산단조성과</u> 가. <u>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u> 나. <u>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u> 다. <u>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u> 라. <u>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u></p> <p><u>2. 삭제</u></p>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5.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 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 종료에 따른 기구 개편
-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개편(안 제3조)
 - 남해안개발과장 → 산단조성과장
 - 남해안기획담당 → 산단기획담당, ·남해안보상담당 → 산단보상담당
 - 규제개혁추진단장 폐지 및 업무이관
 - 규제개혁추진단장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 조정 및 신설(안 제4조의 별표 1)
 -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05. 08.~ 05. 28.
-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조제목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남해안개발과장”을 “산단조성과장”으로 하고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를 삭제한다.

제4조의 조제목과 본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제3조 및 제4조의 산단조성과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과단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마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 공모사업 총괄추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3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 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

하 동 군 공 보

(52) 제 430 호

실과명	분장사무
산단조성 과장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5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u>제3조의2</u> 규정에 따라 군 본청의 <u>실·과장·단장</u> 의 -----	제1조(목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u>제3조의2</u> 규정에 따라 군 본청의 <u>실·과장</u> 의-----
제2조(직무) <u>실·과장·단장</u> 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u>실·과장</u> 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u>실·과·단장</u> 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u>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u> 로, <u>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u>	제3조(<u>실·과장</u> 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u>산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u> 무관 또는 <u>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4조(<u>실·과·단장</u> 의 사무분장) <u>실·과·단장</u> 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u>실·과장</u> 의 사무분장) <u>실·과장</u> 의 사 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하 동 군 공 보

(54) 제 430 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동군 본청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	(생략)	~	(생략)	
	11	(생략)	11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라	(생략)	
		(신설)	마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신설)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바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	공모사업 총괄추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3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	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		
문화관광 실장		(생략)	문화관광 실장		(생략)
~			~		
도시건축 과장		(생략)	도시건축 과장		(생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동군 본청 실·과 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남해안개발과장	가 남해안시대추진에 관한 사항	가 <u>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u> 에 관한 사항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4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4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4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다 <u>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u>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남해안보상에 관한 사항	라 <u>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u>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남해안시대 및 여수세계박람회,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규제개혁 추진단	가. <u>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u>	가. 삭제	가. 삭제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1 삭제	1 삭제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2 삭제	2 삭제
	3 행정절차제도 운영	3 삭제	3 삭제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4 삭제	4 삭제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5 삭제	5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 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58) 제 430 호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44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508(2015.4.29)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 2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2014.12.8)
 - 보건진료서비스 확충 1명
 -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2명

3. 주요 골자

- 군의 정원 총수를 634명(증 7명)으로 조정 (조례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14명→621명(증 7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27명→634명(증 7명)
 - 일반직 계 596명→603명(증 7명)
 - 6급 이하 558명→565명(증 7명)
- 한시기구 정원 반영(조례안 제6조의 별표4)
 - 한시기구 연장 및 명칭변경
 - 남해안개발과 → 산단조성과
 - 5급 정원 연장
 - 존속기한 : 2018. 6. 30
 - 한시기구 폐지 및 기능조정
 - 규제개혁추진단(폐지)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이관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규칙안 제2조의 별표)
 - 기획감사실 : 행정·농업 6급 2명(증1명), 행정·시설 6급 2명(증1명), 행정·환경·시설 7급 1명, 행정·세무·농업 8급 2명(증1명), 행정 9급 1명
 - 안전총괄과 : 행정·시설 9급 3명(증2명), 운전 7급△1명, 행정·공업 7급 1명
 - 주민복지과 : 사회복지 9급 7명(증1명), 행정 9급 1명
 - 규제개혁추진단 : 행정·농업 6급 △1명, 행정·환경·시설 7급 △1명, 행정·세무·농업 8급 △1명
 - 보건소 : 보건진료 8급 5명(증1명)
 - 적량면 : 사무운영 8급 △1명, 행정 8급 1명

하 동 군 공 보

(60) 제 430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FAX055-880-2159,e-mail:gabi100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5.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508(2015.4.29)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 2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2014.12.8)
 - 보건진료서비스 확충 1명
 -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2명

2. 주요내용

- 군의 정원 총수를 634명(증 7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14명→621명(증 7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27명→634명(증 7명)
 - 일반직 계 596명→603명(증 7명)
 - 6급 이하 558명→565명(증 7명)
- 한시기구 정원 반영(안 제6조의 별표4)
 - 한시기구 연장 및 명칭변경
 - 남해안개발과 → 산단조성과
 - 5급 정원 연장
 - 존속기한 : 2018. 6. 30
 - 규제개혁추진단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계획

나. 합 의 : 기획감사실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05월중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 불임참조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627명”을 “6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4명”을 “621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5급)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62) 제 430 호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34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03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65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 고
		직 종	직 급			
본청	산단조성과	일반직	5급	1	2018. 6. 30.	6급 정원 환원

하 동 군 공 보

(64) 제 430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4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34명 ----- ----- 1. ----- : 62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27	-							총 계		634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96	-							일반직 계		603	-						
4급		1	1							4급		1	1						
4급~5급		3	2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58	-							6급 이하 계		565	-						
별정직 계		3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관		-							
연구사		2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관		-							
지도사		25	-							지도사		25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 기한	비고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 기한	비고
		직종	직급						직종	직급			
계	-	-	-	2	-	-							
본청	남해안 개발과	일반직	5급	1	2015. 6. 30.	6급 정원 환원	본청	산단 조성과	일반직	5급	1	2018. 6. 30.	6급 정원 환원
	규제 개혁 추진단	일반직	6급	1	2015. 6.30	7급 정원 환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총 정원 7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보건진료서비스 1명,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 2명
 -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2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5년간) -----금 1,081,641천원

- 맞춤형복지급여 충원(2명) 인건비(보조) : 금 282,241천원
- 기타 충원(5명) 인건비(자체) : 금 799,400천원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 보건진료서비스 확대 1명
 -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2명

나. 추계의 결과

- 맞춤형복지급여 충원(2명)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출	인건비	30,000	61,200	62,424	63,672	64,945	282,241
	소계(a)	30,000	61,200	62,424	63,672	64,945	282,241
세입	국고보조금 (70%)	21,000	42,840	43,696	44,570	45,462	197,568
	지방교부세 (30%)	7,000	18,360	18,728	19,102	19,483	82,673
	소계(b)	30,000	61,200	62,424	63,672	64,945	280,241

※1차년도 비용은 '15년도 하반기 발생비용 추계임

※9급 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연도별 평균 봉급 인상분 2.0%추가 적용

○ 기타충원(5명)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출	인건비	85,000	173,400	176,800	180,300	183,900	799,400
세입	자체예산	85,000	173,400	176,800	180,300	183,900	799,400

※1차년도 비용은 '15년도 하반기 발생비용 추계임

※9급 0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6급 10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50,000천원

※연도별 평균 봉급 인상분 2.0%추가 적용

3. 부대의견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 국정과제인 맞춤형 지역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 보건진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4. 작성자 : 행정과장 김상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자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재원조달	115,000	234,600	239,224	243,972	248,845	1,081,641	
의존 재원	소계	30,000	61,200	62,424	63,672	64,945	282,241
	보조금	21,000	42,840	43,696	44,570	45,462	197,568
	지방교부세	7,000	18,360	18,728	19,102	19,483	82,673
자체 수입	소계	85,000	173,400	176,800	180,300	183,900	799,400
	지방세	85,000	173,400	176,800	180,300	183,900	799,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자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인력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총액인건비와 연계한 지방교부세로 충원
- 기타 자체충원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로 충원

3. 부대의견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 국정과제인 맞춤형 지역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 보건진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4. 협의사항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5. 작 성 자 : 행정과장 김상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5.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재난안전조직 기능 확대 2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508(2015.4.29)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 2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2014.12.8)
 - 보건진료서비스 확대 1명
 - 하동 100년 미래 자원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2명
- 관리운영직군(舊사무기능직) 퇴직(1명)에 따른 정원 조정
- 불부합한 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제2조의 별표)
 - 기획감사실 : 행정·농업 6급 2명(증1명), 행정·시설 6급 2명(증1명)
행정·환경·시설 7급 1명, 행정·세무·농업 8급 2명(증1명)
행정 9급 1명
 - 안전총괄과 : 행정·시설 9급 3명(증2명), 운전 7급△1명, 행정·공업 7급 1명
 - 주민복지과 : 사회복지 9급 7명(증1명), 행정 9급 1명
 - 규제개혁추진단 : 행정·농업 6급 △1명, 행정·환경·시설 7급 △1명
행정·세무·농업 8급 △1명
 - 보건소 : 보건진료 8급 5명(증1명)
 - 적량면 : 사무운영 8급 △1명, 행정 8급 1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계획

나. 합 의 : 기획감사실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05월중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다) 제출의견 :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 불임참조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5급)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70) 제 430 호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34	280	68	49	9	23	13	21	17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603	276	68	24	9	23	11	21	17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71) 제 430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u>158</u>	<u>81</u>	12	7	2	3	2	7	44
	행정		13	12	1						
	세무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9	10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u>15</u>	<u>14</u>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2							1	1	

하 동 군 공 보

(72) 제 430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2	81	19	7	3	5	5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숙기		2						2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73) 제 430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u>147</u>	63	<u>33</u>	4	2		2	3	40
	행정	<u>15</u>	8					2		<u>5</u>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u>보건진료</u>	<u>5</u>		<u>5</u>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u>사무운영</u>	<u>1</u>	1								

하 동 군 공 보

(74) 제 430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사 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8	36	2	2	1	14		1	22
	행정	5	4				1			
	사회복지	17	7							10
	환경	2	2							
	공업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11	10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하 동 군 공 보

(75) 제 430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 동 군 공 보

(76) 제 430 호

신 · 구조 대문비표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27	274	67	49	9	23	13	21	171		총 계		634	280	68	49	9	23	13	21	17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596	270	67	24	9	23	11	21	171	일반직	일반직 계		603	276	68	24	9	23	11	21	171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1								4~5급 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행정		3	2							1			
	의무		1		1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농지		2	1							1		행정·농업·농지		2	1									1	
	행정·농업·농지·시설		1								1		행정·농업·농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2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77) 제 430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체육시설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7	80	12	7	2	3	2	7	44		158	81	12	7	2	3	2	7	44	
	행정		13	12	1								13	12	1							
	세무		1	1									1	1								
	농지		1	1									1	1								
	해양수산		1	1									1	1								
	보건진료		5		5								5									
	환경		2	2									2	2								
	시설		7	7									7	7								
	운전		4	2					1	1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5	5								
	행정·공업		1			1							1			1						
	행정·농업		29	10		3			1	1	14		29	10		3			1	1	14	
	행정·농지		3								3		3									3
	행정·환경		2	2									2	2								
	행정·시설		14	13							1		14	13								1
	전산·방송통신		1	1									1	1								
	농업·농지		3	2		1							3	2		1						
	농업·수의		1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5	3			1					1
	행정·농업·농지		3	1		1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4		3							1
	행정·시설·환경		1								1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4	2				2				
	행정·농업·농지·환경		2	1							1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1		1							
	사무운영		2							1	1		2								1	1

하 동 군 공 보

(78) 제 430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책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책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2	81	19	7	3	5	5	9	53	7급 소계	182	81	19	7	3	5	5	9	53	
	행정	22	15			1		3	1	2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세무	2	2								
	전산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사회복지	8	2							1	5
	숙기	2						2			숙기	2						2			
	공업	3	2				1				공업	3	2				1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녹지	2	2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시설	15	8				2		1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	2		2							
	보건진료	6		6							보건진료	6		6							
	환경	2	2								환경	2	2								
	운전	12	3	2					2	5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2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79) 제 430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시사소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시사소	상수도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6	63	32	4	2		2	3	40	8급 소계		147	63	33	4	2		2	3	40	
	행정		14	8					2		4	행정		15	8					2		5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u>보건진료</u>		5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복지		4	4								농업·복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사무운영		2	1							1	사무운영		1										

하 동 군 공 보

(80) 제 430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사사업소	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사사업소	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3	31	2	2	1	14				1	22	<u>9급 소계</u>	<u>78</u>	<u>36</u>	2	2	1	14				1	22		
	행정	3	2				1							<u>5</u>	<u>4</u>				1							
	사회복지	16	6									10	<u>사회복지</u>	<u>17</u>	<u>7</u>									10		
	환경	2	2											2	2											
	공업	7					7							7					7							
	해양수산	1	1											1	1											
	보건	4					4							4					4							
	운전	3	1									2		3	1									2		
	행정·세무	3	3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6	2								1	3		
	행정·농업	4	2									2		4	2									2		
	행정·시설	9	8				1							<u>행정·시설</u>	<u>11</u>	<u>10</u>			1							
	농업·복지	1	1											1	1											
	농업·수의	2			2									2			2									
	보건·간호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1										1		
	행정·세무·시설	1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1										1		
	행정·농업·복지	3	1									2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1		1										
	전기운영	1	1											1	1											
	기계운영	1						1						1						1						
화공운영	1						1						1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

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84) 제 430 호

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체험마당」 (4.30.-5.3./코엑스)



행 정 자 치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 통보

기구정원규정 개정('15.4.7)에 따라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직개편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조직담당관), 부산광역시(기획담당관), 대구광역시(정책기획관),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정책기획관), 세종특별자치시(정책기획관), 경기도지사(기획담당관), 강원도지사(기획관), 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지사(기획관), 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치정책기획관)

주무관 이범수 행정사무관 조아라 자치제도과장 문영훈 자치제도정책 전결 2015. 4. 29. 관 고규창

협조자

시행 자치제도과-1508 (2015. 4. 29.) 접수 정책기획관-4741 (2015. 4. 29.)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gaha.go.kr>

전화번호 02-2100-3773 팩스번호 02-2100-4227 / picaresqu@mogaha.go.kr / 대국민 공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 직접 체험하세요!!

하 동 군 공 보

(85) 제 430 호

참고 2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구 분	시·도	시·군·구
합계	93명	462명
서울	7	종로구(1), 중구(1), 용산구(1), 성동구(1), 광진구(1), 동대문구(1), 중랑구(1), 성북구(2), 강북구(2), 도봉구(1), 노원구(2), 은평구(1), 서대문구(1), 마포구(1), 양천구(1), 강서구(2), 구로구(2), 금천구(1), 영등포구(2), 동작구(1), 관악구(2), 서초구(2), 강남구(3), 송파구(3), 강동구(2)
부산	6	기장군(2), 중구(1), 서구(2), 동구(1), 영도구(2), 부산진구(1), 동래구(1), 남구(2), 북구(2), 해운대구(3), 사하구(2), 금정구(2), 강서구(2), 연제구(1), 수영구(2), 사상구(2)
대구	5	달성군(1), 중구(1), 동구(1), 서구(1), 남구(1), 북구(2), 수성구(2), 달서구(3)
인천	5	강화군(1), 옹진군(1), 중구(1), 동구(1), 남구(1), 연수구(1), 남동구(3), 부평구(3), 계양구(1), 서구(2)
광주	4	동구(2), 서구(1), 남구(2), 북구(3), 광산구(2)
대전	4	동구(2), 중구(1), 서구(3), 유성구(3), 대덕구(2)
울산	4	울주군(2), 중구(1), 남구(1), 동구(2), 북구(2)
세종	3	-
경기	8	수원시(5), 성남시(3), 안양시(3), 부천시(3), 안산시(2), 고양시(4), 남양주시(4), 용인시(4), 화성시(4), 의정부시(2), 광명시(1), 동두천시(2), 과천시(1), 구리시(1), 오산시(1), 시흥시(1), 군포시(1), 의왕시(2), 하남시(1), 파주시(3), 이천시(2), 안성시(2), 김포시(2), 광주시(3), 양주시(2), 포천시(2), 여주시(2), 평택시(3), 가평군(2), 양평군(2), 연천군(2)
강원	7	동해시(2), 태백시(2), 속초시(2), 춘천시(2), 원주시(2), 강릉시(2), 삼척시(2), 홍천군(3), 횡성군(2), 영월군(2), 평창군(3), 정선군(3), 철원군(2), 화천군(2), 양구군(2), 인제군(4), 고성군(2), 양양군(3)
충북	5	청주시(5), 충주시(2), 제천시(2), 옥천군(2), 영동군(2), 진천군(2), 음성군(2), 보은군(2), 증평군(2), 괴산군(2), 단양군(2)
충남	7	천안시(4), 논산시(3), 계룡시(2), 당진시(2), 공주시(2), 보령시(2), 아산시(2), 서산시(2), 금산군(2), 부여군(3), 서천군(2), 홍성군(2), 예산군(2), 태안군(2), 청양군(2)
전북	7	전주시(4), 군산시(2), 익산시(2), 정읍시(3), 남원시(2), 김제시(2), 완주군(2), 고창군(3), 부안군(2), 진안군(3), 무주군(2), 장수군(2), 임실군(2), 순창군(2)
전남	7	목포시(2), 여수시(2), 순천시(2), 나주시(3), 광양시(2), 고흥군(2), 보성군(2), 화순군(2), 해남군(2), 영암군(2), 무안군(2), 영광군(2), 완도군(3), 담양군(2), 곡성군(2), 구례군(2), 장흥군(2), 강진군(2), 함평군(2), 장성군(2), 진도군(2), 신안군(2)
경북	6	포항시(4), 경주시(2), 김천시(2), 안동시(2), 구미시(2), 영주시(2), 영천시(2), 상주시(2), 문경시(2), 경산시(1), 의성군(2), 철곡군(2), 울진군(2), 군위군(2), 청송군(2), 영양군(2), 영덕군(2), 청도군(2), 고령군(2), 성주군(2), 예천군(2), 봉화군(2), 울릉군(2)
경남	8	창원시(5), 김해시(4), 양산시(2), 진주시(2), 통영시(2), 사천시(2), 밀양시(2), 거제시(2), 함안군(2), 창녕군(2), 고성군(2), 남해군(2), 하동군(2), 거창군(2), 합천군(2), 의령군(2), 산청군(2), 함양군(2)

하 동 군 공 보

(86) 제 430 호

인쇄 : 이중갑 / 행정과 (2015-05-06 08:14:54)

정부3.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 통보

1. 관련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2014. 12. 8.)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 2014. 12. 8.>』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복지노인정책과는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전 시·군에서는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요약포함) 1부.
 2. 시·군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배분내역('15~'17년) 1부. 끝.

경 상 남 도 자 치 부

수신자 복지노인정책과장, 전 시장·군수(조직관리 담당부서장)



주무관	전제민	조직관리담당	정준석	정책기획관	전결 2014. 12. 9.
					박성재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13804 (2014. 12. 9.) 접수 행정과-29463 (2014. 12. 10.)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정책기획관실 / <http://www.gsnd.net>

전화번호 055-211-2425 팩스번호 055-211-2319 / unflagging@korea.kr / 대국민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주소입니다.

문서관리카드 행정과-29463 1/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자체별 배정계획> ('14. 6월기준)

<단위 : 명>

자치단체	(2015~2017년 총 확충규모)				15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				
	총계 (4,823명)	복지직 증원 (2,880명)	행정직 증원 (983명)	인력구조 개선 (960명)	15년 소계 (1,600명)	복지직 증원 (960명)	행정직 증원 (320명)	행정직 재배치 (160명)	자연결원 대체 (160명)
소계	245	145	51	49	83	48	19	8	8
경남창원시	52	28	12	12	17	10	3	2	2
경남진주시	17	11	3	3	6	4	1	-	1
경남통영시	15	9	3	3	5	3	1	1	-
경남사천시	8	4	2	2	3	2	1	-	-
경남김해시	52	30	12	10	17	10	3	2	2
경남밀양시	8	4	2	2	3	2	1	-	-
경남거제시	8	4	2	2	3	2	1	-	-
경남양산시	25	15	5	5	9	5	2	1	1
경남의령군	6	4	1	1	2	1	1	-	-
경남함안군	6	4	1	1	2	1	1	-	-
경남창녕군	6	4	1	1	2	1	1	-	-
경남고성군	6	4	1	1	2	1	1	-	-
경남남해군	6	4	1	1	2	1	1	-	-
경남하동군	6	4	1	1	2	1	1	-	-
경남산청군	6	4	1	1	2	1	-	1	-
경남함양군	6	4	1	1	2	1	-	-	1
경남거창군	6	4	1	1	2	1	-	1	-
경남합천군	6	4	1	1	2	1	-	-	1

하 동 군 공 보

(88) 제 430 호

인쇄 : 이중갑 / 행정과 (2015-05-03 11:29:03)

정부3.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 통보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988(2015.3.23.)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규제개혁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 1부. 끝.

경 상 남 도 자 의 무

수신자 창원시장(인사조직과장), 진주시장(총무과장), 통영시장(행정과장), 사천시장(행정과장), 김해시장(총무과장), 밀양시장(행정과장), 거제시장(행정과장), 양산시장(행정과장), 의령군수(행정과장), 함안군수(행정과장), 창녕군수(행정과장), 고성군수(행정과장), 남해군수(행정과장), 하동군수(행정과장), 산청군수(안진행정과장), 함양군수(행정과장), 거창군수(행정과장), 합천군수(행정과장)

주무관 김옥남 조직관리담당 정준석 정책기획관 전결 2015. 3. 23. 윤인국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3272 (2015. 3. 23.) 접수 행정과-12340 (2015. 3. 23.)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http://www.gsnd.net

전화번호 055-211-2423 팩스번호 055-211-2319 / ejolde@korea.kr / 대국민 공개

재난안전 위해요소 신고(안전신문고 포털, 앱)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합니다.

문서관리카드 행정과-12340 1/1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

I 추진 배경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1년 한시기구) 설치('14.4.~'15.4.)
 - ※ 시·도(4·5급 1명 및 5급이하 2명 한시, 2명 이체), 시·군·구(6급 1명 한시, 3명 이체)
- 존속기한 만료('15.4.~8.)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기능 분석을 통한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 주요 성과 :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일괄 정비 >

-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개정
- '13년말 기준 등록규제 52,541건 중 9,913건(18.8%) 감축
- 지방규제 비교 시스템, 지방규제 신고센터, 끝장토론회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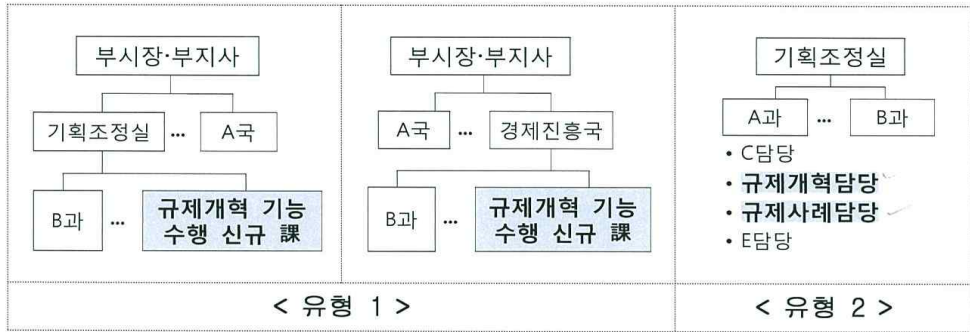
II 개편 방안

1. 기 능 : 10개 기능 유지, 3개 기능 신설

-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개선
-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도 운영
-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지방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전문교육 지원
-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신규)
- 「지방규제 지수」 운영(신규)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신규)

2. 기 구

- (시·도) 지자체별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유형 1~2 중 선택
 - 유형 1 : 단장 직급(4.5급)을 감안해 타 기능 통합 후 課* 단위 구성
 - * 기획 또는 경제 업무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하고 12명 이상의 정원으로 구성
 - 유형 2 : 타 課(기획 또는 경제 업무 담당 실·국 소속)에 담당 단위로 편입



- (시·군·구) 타 課(기획 또는 경제 업무 수행)에 담당 단위로 편입

3. 인 력

- '15년 기준인건비에 규제개혁추진단 274명(시·도 48명, 시·군·구 226명) 증원 조치 완료

Ⅲ 행정사항

- 자치법규 개정 추진 : '15. 8. 31. 까지
- 시·도에서는 시·도 및 관할 시·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개편 추진 상황과 결과를 취합하여 행자부로 제출 : '15. 6. 30. 까지

하동군 공고 제2015 - 452호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우리군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 해양낚시공원을 지역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장소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해양낚시공원의 명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명칭 :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 위치 :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16-4-5번지 일원
- 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해양낚시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9조)
-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5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하동군(경제수산과, 전화 880-2443, FAX 880-21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92) 제 430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제안이유

- 우리군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 해양낚시공원을 지역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장소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해양낚시공원의 명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명칭 :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 위치 :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16-4-5번지 일원
- 나. 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다. 해양낚시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9조)
- 라.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장
- 라. 다른 사군 입법선례
 -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마.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00. 0. 00. ~ 0. 00.(00일간)
 - 나) 예고방법 :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 다) 제출의견 :
 - 라)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 2) 의원 간담회
 - 가) 일 시 : 2000. 0. 00.() 00:00
 - 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하 동 군 공 보

(94) 제 430 호

의견제시		검토의견	검 토 결 과	
제출인	의견		당초안	수정안
000 의원	제8조관련 : 농촌지역 특성상 여성위원을 임명하기가 쉽 지않은데	「 여성 발전 기본 법」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 위원의 60% 초과금지'에 따른것으로서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 구성·운영) ② 협의회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특정성의 위원수가	<미반영>

- 3) 규제심사 :
- 4) 비용추계 :
-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 의원간담회 설명 자료 활용 시 “3. 참고사항 바. 그 밖의 사항”은 작성 안함.

- > 추후 ① 입법예고 시 : 1. ~ 2.까지 기재
 - ②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
 - 1. ~ 3.까지 기재, 의원간담회 의견 반영여부 기재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 이라 한다) 내에 있는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 및 체험시설 과 휴게시설을 말한다.
- 2. “낚시 및 체험시설”이란 유어장 지정구역 내의 가두리낚시터, 콘도형낚시터, 좌대형낚시터, 갯벌체험장 등을 말한다.
- 3. “휴게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 종합센터, 해안데크, 조정시설 등 을 말한다.
- 4. “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① 명칭은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

②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16-5번지 일원이며, 범위는 낚시 및 체험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낚시공원 시설의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콘도형낚시터와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2.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고성방가 행위
-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 3. 취사 및 야영 행위
- 4.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
- 5. 관리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낚시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96) 제 430 호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③ 납부된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낚시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업무) 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낚시공원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 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면 군수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차 없이 운영에 적응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용료) ① 낚시공원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화,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2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98) 제 430 호

제21조(청문)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민·형사상책임)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5조(준용) 낚시공원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낚시터 및 갯벌체험장 이용료(제7조 관련)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가두리 낚시터	성 인	1인/1일	40,000원	
	청소년		30,000원	
큰도형 낚시터	성 인	1인/1일	20,000원	
	청소년		15,000원	
	성 인	1인/1박2일	25,000원	
	청소년		20,000원	
좌대형 낚시터	성 인	1인/1일	15,000원	
	청소년		10,000원	
갯벌 체험장	성 인	1인/1일	10,000원	
	청소년		5,000원	

- ※ ① 성인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만 7세 이상 19세 미만
만 7세 미만은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가능
- ② 큰도형낚시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입실시간은 당일 오전 11시, 퇴실시간은 그 다음 날 오전 10시
 - 1시간 초과~3시간까지는 인당 1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징수

【별표 2】

숙박시설 이용료(제7조 관련)

규 모	사용기간	사 용 료 (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대형(42.9제곱미터)	1실/1일	150,000	200,000	6~8인기준
소형(23.1제곱미터)	1실/1일	120,000	150,000	4인기준

- ※ ① 성수기 : 매년 1월, 7월, 8월, 12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② 1일 사용시간은 입실시간은 당일 오전 11시, 퇴실시간은 그 다음 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 초과~3시간까지는 대형 5만원, 소형 3만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별표 3】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이용예정일 기준)		비 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등	성수기/ 비수기	선납금 전액 반환		제7조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된 경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예약일 기준)	성수기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제7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90%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70%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50% 반환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20% 반환	
		당일 취소	반환하지 않음	
	비수기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90% 반환	
		당일 취소	선납금의 80% 반환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별지 제1호서식】

해양낚시공원 수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시설물 내용
 - 지목(구조) :
 - 면 적 :

○ 수탁(사용)기간 :

○ 수탁(사용)목적 :

○ 수탁(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수탁(사용허가)을 신청합니다.

붙임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 사용인감(법인일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하동군수 귀하